

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의안 번호	94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2.
제출자 : 안산시장

I. 제안사유

- 안산인력은행 운영을 위해 임차한 고잔동 533-2번지 석탑프라자 5층(555.75m^2) 건물이 안산지방노동사무소와의 통합으로 사용목적이 소멸된 바, 동 임차재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며,
- 자폐아동의 조기 발견과 치료 교육을 통해 자폐아의 인지 능력을 극대화하여 정상아동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돋고
- 제3섹타 형식의 민·관 협력을 통해 시 재정투입은 최소화하면서 민간의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접목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실현하여 자폐아 부모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상기(기존 안산인력은행)건물을 일부를(269.95m^2) 임차하여 자폐아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.
-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함.

II. 주요내용

가. 취득재산 (1건)

1) 자폐아치료센터 설치

- 자폐아동의 취학전 조기교육 치료를 통하여 행동과 언어, 그리고 인지능력을 정상아동과 함께 학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,
- 부모의 사회·경제적 도움을 주고,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자 함.

□ 사업계획

구 분	당 초	변 경
건물의 소재지	안산시 고잔동 533-2 (석탑프라자 5층)	좌 동
사용(취득)목적	안산인력은행	자폐아치료센터
사용(취득)면적	555.78㎡ (168평) (5층전부)	269.95㎡ (82평) (5층일부)
임차예정금액	300,000천원	163,540천원
관리주관부서	실업대책팀	사회여성과

□ 향후추진계획

-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: 2001. 2월
- 임대차 계약 체결 : 2001. 2월
- 한국인지과학연구소와 운영협약 체결 : 2001. 2월
- 자폐치료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: 2001. 2월
- 자폐치료센터 개설 운영 : 2001. 3월

□ 주관과 의견 (사회여성과)

- 안산인력은행의 통합으로 사용목적이 소멸된 공유재산(전세권)을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기 설정된 전세권의 순위 및 설정범위를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고,
- 제3섹터형 민·관 협력을 통해 시 재정투입은 최소화하면서도 민간의 양질의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자폐아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정상아동과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폐아동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
-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 치료와 교육을 받음으로서 자폐아동 부모들의 사회복지 욕구 충족 및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폐아치료센터를 개설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* 자폐증이란 ?

- 시선회피, 대인과의 관계회피, 자기몰입, 강박행동, 주의력결핍, 자해행동, 과다행동, 소리의 보존능력 결핍등을 말하며 「자기만의 세계로 몰입하는 특징」을 보임.

* 우리시 자폐아동수(추정) : 1,500여명 (인구 기준 0.27%)

- 「늘푸른나무」 자폐아 치료센터 교육치료 종 : 35명
- 「늘푸른나무」 자폐아 치료센터 대기자 : 84명
- 기타 자폐의증 아동(추정) : 1,381명

나. 처분재산 (1건)

1) 안산인력은행 임차해지

- 실업자 조기정착을 위해 우리시에서 임차한 고잔동 533-2번지 석탑프라자 5층 건물의 안산인력은행이 안산지방노동사무소와의 통합으로 사용목적이 소멸된바 동 임차재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함.

□ 재산현황

- 소재지 : 안산시 고잔동 533-2번지 석탑프라자 5층
- 면적 : 555.75㎡ (168평)
- 임차금액 : 300,000천원
- 임차기간 : '98. 5. 30 ~ 2000. 5. 30 (2년간 - 기간경과후 자동연장)
- 임차해지 : 2001. 1. 29

□ 향후추진계획

-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: 2001. 2월
- 차액보증금 및 이자징수 : 2001. 2월

□ 주관과 의견 (실업대책팀)

- 실업자의 취업알선을 위해 우리시에서 건물을 임차하고 노동부에서 운영하던 안산인력은행이 폐쇄되어 임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으로
- 임차건물의 재산상태가 양호하고 전세권도 1순위로 설정되었으나 경기불황, 동절기 등의 원인으로 보증금반환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회여성과에서 설치코자하는 자폐아치료센터로 활용하고 차액을 회수함이 좋을것으로 판단됨.

III.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: 불임

- 가.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(7-1)
- 나. 2001년도 취득재산 목록 (7-2)
- 다. 2001년도 처분재산 목록 (7-4)

IV. 관계법령 발췌내용 : 불임

공유재산 관리계획서

2001년도 관리계획변경총괄표 (7-1)

(단위 : 평, 천원)

구 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고
		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	
취득	계	토지 건물 기타	1건	269.95	163,540				1건	269.95	163,540	
	1. 매입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2. 교환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3. 기타취득	토지 건물 기타	1건	269.95	163,540				1건	269.95	163,540	
처분	계	토지 건물 기타	1건	555.75	300,000				1건	555.75	300,000	
	4. 매각	토지 건물 기타	1건	555.75	300,000				1건	555.75	300,000	
	5. 열실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6. 교환으로 처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	계 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
()

()

()

()

2001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(7-2)

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표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취득대상소유자 주소, 성명	비고
	지목	소재지	수량					
계	토지 건물 기타	1건	269.95	163,540				
1	건물	고잔동 533-2번지	269.95	163,540	2001	자폐아치료센터 설치(임차)		사회여성과

2000년도 처분대상재산목록 (7-4)

(단위 : 원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임차해지 수 량	과표또는 평 가 액	임 차 해 지 시 기	임 차 해 지 사 유	매 수 회 망 자 주 소 성 명	비 고
	지 목	소 재 지	일 단의 수 량						
계	토 지 건 물 기 타	1 건	555.75	555.75	300,000				
1	건 물	고잔동 533-2 석탑프라자 5층전부	555.75 (168평형)	555.75 (168평형)	300,000	2001년	○ 안산인력은행이 안산지방노동사 무소와의 통합 으로 사용목적 소멸	임 차 해 지	실 업 대책팀

□ 관계법령 발췌내용

○ 지방자치법

- 지방자치법 제35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6.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
○ 지방재정법

-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
- ②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
 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)를,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 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.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)

○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

-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, 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